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및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51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6
2.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검토의견	8
다. 관계 기관 의견	1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 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 참고로,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이 종전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u>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u>복무기간</u>----- -----.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군복무크레딧¹⁾보다 보장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경우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1)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만,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율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정부는 군복무크레딧 확대에 따른 대규모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효과성이나 기존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및 병사 월급의 증가 추세(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한편, 병역의무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병역법」 제72조제1항²⁾에서는 현역·예비역·보충역 병(兵)의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안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안 부칙 제2조는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범위를 개정안이 의도한 취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참고하여 안 제18조제1항의 적용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대하면서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4625호), 한지아의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8591호), 위성곤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9304호) 및 백선희의원(18개월, 의안번호 제10576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26. 1. 1.)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2.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³⁾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 ⑥ (생략)

현행	개정안
	일부더 시행한다. 제3조(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4)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5)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6)에서 정한 ‘소득’의 범

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6)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음.⁷⁾

-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이 육아휴직 직전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그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함.⁸⁾

□ 그런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노령연금액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비례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바,⁹⁾ 육아휴직 중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데 따른 기여이력 상실 이 해당 육아휴직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육아휴직자는 현행법 제92조제1항제2호10)에 따른 ‘추후 납부제도’

7)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8) 예를 들어, A사 소속 근로자인 甲의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A사가 육아휴직 중인 甲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A사의 사업주)와 근로자(甲)는 각각 18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25년도 보험료를 9% 적용 시 162,000원)의 반액씩을 납부하여야 함.

9)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각 호 생략)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0)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중에 내지 아니하였던 연금보험료를 복직 후 등 본인이 원하는 때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지난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연평균 약 19.3만명) 대비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한 인원(연평균 약 1,230명)은 약 0.64%에 불과하여 이들의 기여이력 상실분이 보충되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최근 6년간 육아휴직자 중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인원 >

(단위: 명, %)

구 분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A)	추후 납부 신청 인원 (B)	비율 (B/A)
6개년 평균	193,090	1,230	0.64
2019	164,472	678	0.41
2020	175,852	2,257	1.28
2021	181,388	1,866	0.03
2022	202,257	1,040	0.51
2023	210,677	602	0.29
2024	223,898	942	0.42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반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가입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¹¹⁾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서, 지역가입자¹²⁾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육아휴직은 여전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¹³⁾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기로 선택한 가입자에게만 연금보험료 반액이 지원되는데,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에 연금보험료 반액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가입자에 한하여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¹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00조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3)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3 및 제100조의4에서는 각각 ‘국민인 근로자’와 ‘국민인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¹⁵⁾ 외국인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제100조의5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반액을 국가가 지원할 때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00조의5(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억원)	2,445	2,825	3,258	3,747	4,302	16,576	3,315
연간 지원 개월 수(개월)	1,518,711	1,593,660	1,672,308	1,754,837	1,841,439	-	-
평균 통상 임금액(백만원)	3.4	3.5	3.7	3.9	4.1	-	-
보험료율(%)	10.0	10.5	11.0	11.5	12.0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만으로는 육아휴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결정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을 육아휴직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여 안 제100조의5에 따라

15)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국가가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반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315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가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6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과 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른 점¹⁶⁾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

16) 4인 이하 사업장 18.8% vs. 300인 이상 사업장 37.4% (출처: 통계청, 2023년 육아휴직통계)